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039305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0393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636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훈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변론종결 2024. 4. 4.

판결선고 2024. 5. 3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합563665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안 제8, 9행의 “경영참여행”을 “경영참여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6행의 “발생이”를 “조치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의 “진술과 보증”을 “진술 및 보장”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0행의 “6)”을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0~11행의 “10억 원과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을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2행의 “파기되고”를 “취소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2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다음에 “제4조 제8항”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16행의 “재무재표”를 “재무제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6행의 “간주되는 점”과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위 별첨 7(4)에는 이 사건 관련소송의 내용뿐만 아니라 ‘소가: 6,747,286,694원’도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자신이 위 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부담하게 될 채무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가

파악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인한 위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16면 제13행의 “① 이 사건”부터 제17행의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피고의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체결된 것인 점, 피고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재무상태 등을 보장하며(제7조), 거래종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제4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시와 비슷한 가치의 기업경영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을 진술보장 약정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위 소송과 관련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사건의 결과와 원고의 의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18면 제17행의 “피고”를 “원고”로, “원고”를 “피고”로 각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1조 제5항에 따라 물취한 계약금 1,000,000,000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별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1조 제5항이 정한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 제11조 제5항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및 그 발생 이자는 위약벌로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원고는 위 위약벌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님과 상당하고 합리적인 금액임을 인정하고,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더라도 그 반환이나 감액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은 제10조 제1항에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진술 및 보장, 확인 기타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고, 입찰을 통해 그 인수인으로 원고를 선정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될 경우 피고는 다른 인수인을 물색해야 하므로 제때에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나아가 경영권 양도가 무산되는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입게 될 손해를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의 10%에 불과한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려는 것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동수, 판사 남양우, 판사 홍성욱